기업애로

05

조례 개정을 통한 공장이주대책 수립으로 난제 민원 해결

추진부서 | 경기도 시흥시 신도시사업과, 031-310-3936

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

개선배경

-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2019. 7. 19. 지구 지정되었으며, 2024년 조성공사 착공하여, 현재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전대책을 미수립하여 기존 공장주들의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
- 특히, 사업시행자가 진행한 건물인도 소송[사건번호 2024가단62120(2024. 5. 8.)]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목이 축사인 필지에 대해서는 공장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여 공장이주대책 수립 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졌으며, 이로 인해 공장주들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됨
- 아울러,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이주대책 수립 가능 필지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로 한정되어 있어, 수요자 간 입지 선점 및 배정 문제에 따른 의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이주대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임

개선내용

- 사업시행자, 공장주 및 지역구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으며, 현재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및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로 공급 가능 필지를 구체화하여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본격 추진 중임
- 특히,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준주거지역에 허용 가능한 도시형공장 용도를 확대함으로써, 하중 및 거모지구 내 공장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

〈시흥시 도시계획조례 개정〉

구분	내용
시흥시 도시계획 조례(당초)	〈별표6〉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.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7호의 공장(**별표 3 제2호아목의 공장은 제외한다**)
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(변경)	〈별표6〉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2. 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 1 제17호의 공장(다만, 영 별표4제2호차목(1)부터(6)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중 **시흥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근 환경에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**한다)
	〈영 별표4제2호차목〉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1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(2)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(3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. 다만,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(4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에까지 해당하는 것 (5)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(6) 「소음 · 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
추진과정

- 공장주, 사업시행자, 시흥시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,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공공주택지구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추진
- 공장주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해결방안을 요청,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,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공동 모색
- 아울러, 필요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내로 공장이주대책 수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상 도시형공장의 허용용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 추진 완료

개선효과

- 사업시행자(LH)의 공장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,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공장이주대책 수립을 이끌어내었으며, 이를 통해 기존 공장주들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고,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함
- 공장이주대책 수립으로 인해 하중지구 조성공사의 사업 지연 가능성을 낮추고,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하여 향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

현장조사



민원인과의 대책회의